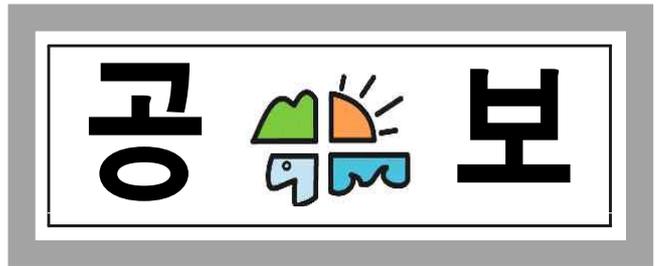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956호 2015년 9월 25일(금)

공 고

-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2
-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4
-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..... 5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415, FAX : 639-2106)

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15년 9월 25일

속 초 시 장

가. 공 고 명 :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나. 도로위치 : 도로지정 조서 참조

다. 공고기간 : 2015. 9. 25. ~ 10. 25. (30일간)

라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소유자	건축허가번호 (건축허가일)	비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강원도 속초시 대포동	[계]	3필지	1,178	1,178	데이드림 개발(주)	2014-도시디자인과-신축허가 -제56호 (2014. 9. 23.)	건축주 : 데이드림 개발(주)
	486-10	전	768	768			
	486-11	전	296	296			
	486-12	도	114	114			

마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
바. 관계도서 :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비치(열람가능)

사. 문의사항 :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(033-639-225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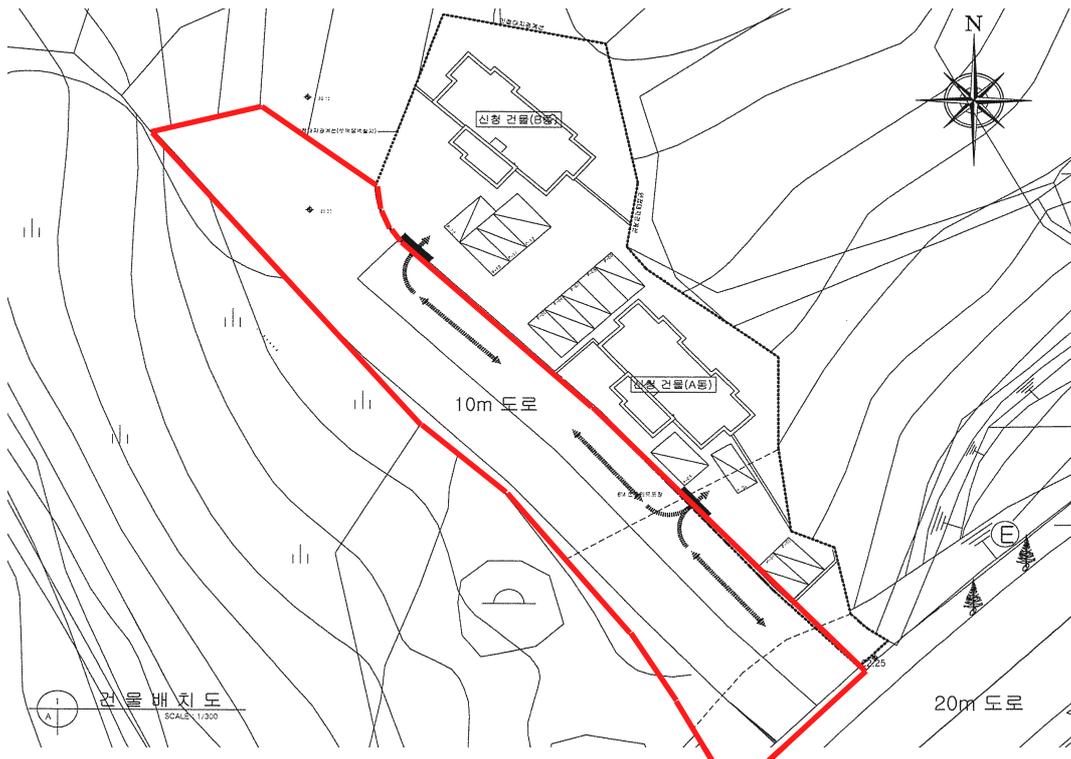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•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 치 도

축 척 NONE



현 황 도

축 척 NONE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·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, 소유자 사망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09. 25.

속 초 시 장

1. 공고(의견제출)기간 : 2015. 09. 25. ~ 2015. 10. 09. (14일간)
2. 공고장소 :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,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3. 직권말소일 : 2015. 09. 24.
4. 공시송달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
나. 당사자	성명(명칭)	조영준
	주 소 (대상상주소)	강원도 속초시 교동 664-13번지
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	건축물의 철거·멸실	
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
	위치	강원도 속초시 교동 664-13번지
	건축물 현 황	벽돌조 1층 슬라브지붕 주택 25.935㎡
마. 법적근거 및 조문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	

5. 유의 사항

가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디자인과(☎033-639-276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「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」 입법예고

「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9월 23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

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-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(청소년수련관) 사용료 현실화

3. 주요내용

- 제명 및 목적규정 변경(안 제1조)
- 수련시설의 정의 변경(안 제2조제2호)
-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(청소년수련관) 사용료 인상(안 제6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**2015년 10월 13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·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217-030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469-6) 속초시청
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담당(전화: 033-639-2686, FAX: 033-639-2739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(033-639-268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”를 “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, 나아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수련시설”을 “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제8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구내식당 및 매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준용한다.

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사

제6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6조 “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운영자문위원회”를 “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별표 2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본시설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	사용료	비 고	
숙박시설 (1인1일)	청소년	단 체	8,000	○ 조간,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1회로 한다.	
	일 반	단 체	10,000		
체육관	오 전	경 기	1회	40,000	○ 이용시간 구분 - 조간 06:00 ~ 09:00 - 오전 09:00 ~ 13:00 - 오후 13:00 ~ 17:00 - 야간 18:00 ~ 22:00 ○ 토요일, 공휴일은 사용료의 20% 가산 ○ 1회기준 사용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회시간 사용으로 본다. ○ 회의실은 청소년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경우 모두 일반인으로 본다. ○ 기타는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로 본다. ○ 숙박시설은 관내 청소년 사용시 3,000원 할인한다. ○ 체육관은 속초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오전·오후에 한하여 전기료는 면제한다.
		경기외	1회	80,000	
		기 타	1인	800	
	오 후	경 기	1회	40,000	
		경기외	1회	80,000	
		기 타	1인	800	
	조 간 야 간	경 기	1회	80,000	
		경기외	1회	160,000	
		기 타	1인	1,600	
회의실	1회 (4시간)	청소년	1회	15,000	
		일 반	1회	30,000	

부 칙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기 <u>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수련시설”이라 함은 실내체육관, 생활실, 독서실, 특별활동실, 전시실, 상담실, 회의실, 씨름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.</p> <p>3.·4. (생 략)</p> <p>5. “청소년단체”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시설의 사용) ① (생 략)</p>	<p><u>속초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청소년활동 진흥법</u>」 제11조에 따라 <u>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, 나아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 . “ 시 설 ” ----- ----- -----.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----- -----제3조제8항에 따른 -----.</p> <p>제4조(시설의 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시설사용예정 3일전까지 해당시설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구내식당 및 매점사용허가에 관한 모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 82조 및 동법시행령제85조,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(생략)

제5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. 단, 2인이상이 동일한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정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기타행사

제6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[별표2]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8조(사용료 등의 감면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

② 제1항에 따른-----

-----.

③ 구내식당 및 매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준용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사

제6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제4조에 따라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용료 등의 감면) ① ----
-각 호의 어느 하나-----

면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7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(생략)

제9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
제13조(입장료)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에 입장하려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⑤ 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할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⑥·⑦ (생략)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그 밖에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용료의 반환) -----
-----.
-----각 호의 어느 하나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-----그-----밖의

제13조(입장료) ① -----

-----.
-----각 호의 하나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-----
-----범위-----
-----.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운영자문위원회 설치) 시
장은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
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속초시
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운영
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16조(운영자문위원회 설치)---

-----속초시
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 운
영위원회-----.

[별표 2]

체육청소년시설사용료(제6조관련)

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(제6조관련)

현				개 정 안			
구 분	기 준		사용료	비 고			
숙박시설 (1인1일)	청소년	단 체	4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1회로 한다. ○ 이용시간 구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전 09:00 ~ 12:00 - 오후 12:00 ~ 17:00 - 야간 17:00 ~ 22:00 ○ 토요일 오후, 공휴일은 사용료의 2할 가산 ○ 1회기준 사용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회시간 사용으로 본다. ○ 회의실을 청소년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모두 일반인으로 본다. ○ 기타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로 본다. 			
		개 인	6,000				
	일 반	단 체	10,000				
체육관	오 전	경 기 1회	20,000				
		경기외 1회	40,000				
		기 타 1인	400				
	오 후	경 기 1회	30,000				
		경기외 1회	60,000				
		기 타 1인	600				
	야 간	경 기 1회	40,000				
		경기외 1회	80,000				
		기 타 1인	800				
회의실	1회 4시간	청소년 1회	15,000				
		일 반 1회	30,000				
숙박시설 (1인1일)	청소년	단 체	8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건,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1회로 한다. ○ 이용시간 구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건 06:00 ~ 09:00 - 오전 09:00 ~ 13:00 - 오후 13:00 ~ 17:00 - 야간 18:00 ~ 22:00 ○ 토요일, 공휴일은 사용료의 20% 가산 ○ 1회기준 사용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회시간 사용으로 본다. ○ 회의실은 청소년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경우 모두 일반인으로 본다. ○ 기타는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로 본다. ○ 숙박시설은 관내 청소년 사용시 3,000원 할인한다. ○ 체육관은 속초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오전·오후에 한하여 전기료는 면제한다. 			
		일 반	단 체		10,000		
체육관	오 전	경 기 1회	40,000				
		경기외 1회	80,000				
		기 타 1인	800				
	오 후	경 기 1회	40,000				
		경기외 1회	80,000				
		기 타 1인	800				
	조 간 야 간	경 기 1회	80,000				
		경기외 1회	160,000				
		기 타 1인	1,600				
회의실	1회 (4시간)	청소년 1회	15,000				
		일 반 1회	30,000				